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제 1156 호】

2015년 02월 23일 (월)

선람	기관의 장

회람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조례 제1640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1641호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고양시 조례 제1642호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고양시 조례 제1643호	고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3
고양시 조례 제1644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고양시 조례 제1645호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47
고양시 조례 제1646호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2

공 고

고양시 훈령 제316호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61
고양시 훈령 제317호	고양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66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

2015년 02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40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양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고양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고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소속기관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명”을 “결과를 보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본직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본직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법령에 의한”을 “법령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 대해서는”으로, “가산한다”를 “더하여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얻지”를 “사용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 대해서는”으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을 “연가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잔여”를 “남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일수는 이를”을 “일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연도”와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계산하되”를 “계산한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병가일수는 이를”을 “병가일수는”으로,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을 “있는 병가일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제3항 중 “첨부”를 “제출”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의”를 “또는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1항 중 “의 기준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단서 내용으로 “다만, 부부공무원은 1명에 한하여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따른다”를 “따르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도래전 사용은 금지한다.
2.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 사용을 금지한다.
3. 장기재직휴가 사용자는 장기재직휴가 관리를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고양시청 복무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제1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자녀가 군입영이 확정되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② 퇴직준비휴가 사용자는 제23조제1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소관과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유 한 우
	팀 장 성 명	행정지원팀장 강 병 의
	담 당 자 성명·전화	장주민 (031-8075-2173)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고양시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생략)	**제2조(복무선서)** ① 고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해당 ② (현행과 같음) ③ 결과를 보고.....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에 따라 공무원은 본직기관의 장 ②공무원이 해당..... 본직기관의 장.....

현 행	개 정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파견근무)** ①에 따라 공무원은 ② 공무원이 해당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복장등) ① (생략)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총리령).....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법령에 따른 ③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하여 계산한다. 1. 사용하지 2.에 따른 남은

현 행	개 정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④ 연가신청.....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에 따른 해당 범위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⑥ 해당 남은 범위 해당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① 일수는

현 행	개 정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 이상은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절사한다. $\frac{\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text{12(월)}} \times$ 당해년도 연가일수	② 따른 해당연도 계산한다. 이 경우 $\frac{\text{해당연도}}{\text{.....}} \times$ 해당연도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에 따른 병가일수는 있는 병가일수는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제21조(병가)** ① 범위에 따라 1. ~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범위....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출.....

현 행	개 정
제22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생략)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8. (생략) <신 설>	제22조(공가) 1. 그 밖의 따른 2. (현행과 같음) 3.에 따라 4. (현행과 같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6. 제31조에 따른 7. 또는 그 밖의 8. (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에 따른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 다만, 부부공무원은 1명에 한하여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⑥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2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⑥ 범위..... 한 차례에 한정하여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⑪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따르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도래전 사용은 금지한다. 2.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 사용을 금지한다. 3. 장기재직휴가 사용자는 장기재직휴가 관리를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고양시청 복무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⑫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삭 제>
<신 설>	⑬ 자녀가 군입영이 확정되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현 행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신 설>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 정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신설 및 연장하여 공무원의 복지 증진

○ 업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퇴직준비 휴가로 발생되는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제22조)

○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는 경우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변경(제23조제1항 별표 3)

○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제23조제2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확대(제23조제4항)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 5일간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제23조제11항)

○ 퇴직준비휴가는 업무공백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삭제(제23조제12항)

○ 자녀가 군입영이 확정되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1일의 특별휴가 신설(제23조제1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 정비

고양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

2015년 02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41호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범위는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 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심사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현장조사 및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검토”를 “현장조사”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필요할 경우”를 “필요할 경우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통하거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사 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주택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주택과장 김 대 식
	팀 장 성 명	주택정책팀장 이 상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재 용 (031-8075-3112)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1천만원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의 범위내에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3.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하여만 지원함.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적용범위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시장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에 따라 ----------. ② 적용범위는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8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 금액 300만	제4조(지원대상 등) ① ----------10년----------.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한

현 행	개 정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 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게 사업자를 선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 국토교통부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토는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검토내용을 보고한다.	③ ----------. 이 경우 시장은 심사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제2항에 따라----- ---------- 해당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 (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 (생략)	제9조 (정산 및 보조금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준다.	③ ---------- 현장조사 ----------.
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검토를 통하거나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

현 행	개 정
	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신 설>	제36조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사 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현 행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지원	1천만원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지원	1천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지원	2천만원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의 범위내에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3.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하여만 지원함.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개 정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1.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지원	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지원	1천만원	

3.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지원	1천만원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지원	2천만원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지원	10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	3천만원	

6.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세대수	최대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지원	1000세대 미만	1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2천만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의 범위내에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3.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하여만 지원함.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 **제안자 :** 장제환, 김미현, 김혜련, 유선종 의원

□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적용범위를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함.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변경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한 공사 종류에 대하여 5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보조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로서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지원단지의 현장조사 시 심사위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정산 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신설함.

○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심사 시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별표1] 제6호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 지원금액 2~3천만원을 1천5백만원~2천만원으로 변경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고양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

2015년 02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42호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범위는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주택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주택과장 김 대 식
	팀 장 성 명	공동주택관리팀장 신 용 성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유 민 (031-8075-3120)

[별표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지원	2천만원	

※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지원임

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5백만원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70% 지원	1천만원	

7.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5백만원	

(비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3.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하여만 지원함.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단이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공동주택----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 최초 건축 당시 서로 인접하여 건축되어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
2.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	<삭 제>

현 행	개 정
령」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① (생 략) ② 적용범위는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적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적용범위는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8년이 경과된 단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1. ~ 8. (생 략)	제4조(지원대상 등) ---------- ---------- ---------- ---------- ---------- ---- 10년 ---------- ---------- ----------. 1. ~ 8.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	<삭 제>

현 행	개 정
다) 제43조의3에 따라 15년 이상 된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별표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지원	2천만원	

※1호 및 2호에 대한 지원임

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5백만원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7.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70% 지원	1천만원	

※6호 및 7호에 대한 지원임

(비 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3.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하여만 지원함.
4.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개 정

[별표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지원	2천만원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지원임

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5백만원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1천만원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확보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80% 지원	2천만원	

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70% 지원	1천만원	

7.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시 지원율	최대 지원금액	비고
총 사업비의 50% 지원	5백만원	

<삭제>

(비 고)

1. 보조금 지원금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보조금 지원금액은 시 지원율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3.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에 대하여만 지원함.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공사의 최대지원금액은 공사종류별 합계액으로 한다.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안자 :** 장제환, 고종국, 김운남, 김필례, 이영훈 의원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된 동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적용대상 공동주택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적용범위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동일 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적용함.

○ 지원범위 공동주택을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함.

○ [별표1] 제7호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 지원금액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함.

고양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5년 02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43호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고양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

수 자료 등 지식 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6.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7. 그 밖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자의 책무 등)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 업무 지침 및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치료사, 동화구연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학교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인력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담당 한다.

④ 운영자와 운영인력은 시에서 시행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운영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식정보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9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시장은 직영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절차에 관하여는「도서관법 시행령」제1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인력) ①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적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5조(재정적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2.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3일 미만 또는 1일 3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휴관중인 작은도서관
3. 자료 열람 또는 대출대상을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고양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모두가 아닌 일부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도서관
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및 지원된 것으로 본다.

소 관 과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성명	덕양구도서관과장 석 재 복
	팀 장 직위·성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한 기
	담 당 자 직위·성명	이 선 화 (031-8075-9012)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가. 제안이유

○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함.(제3조)

○ 시장과 운영자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제4조, 제5조)

○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제7조)

○ 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위탁 사항을 규정함.(제8조, 제9조)

○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폐관, 취소 등을 규정함.(제10조, 제11조)

○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고양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

2015년 02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44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나”목~“자”목을 “다”목~“차”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여성가족국 사무 중 위생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나”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여성가족국 사무 중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육문화국 사무 중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의정담당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의정담당관 고 영 일
	팀 장 성 명	의사팀장 조 재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태은 (031-8075-387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환경경제위원회 가. (생략) <신 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푸른도시사업소 사무 중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구청 사무 중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킨텍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환경에너지(ENE)사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생략) 5. 문화복지위원회 가. (생략) 나. 여성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육문화국 사무 중 문화예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아. (생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환경경제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여성가족국 사무 중 위생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푸른도시사업소 사무 중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구청 사무 중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킨텍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 중 환경에너지(ENE)사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현행과 같음) 5. 문화복지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여성가족국 사무 중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육문화국 사무 중 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아. (현행과 같음)

고양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 내역

현 행		변 경	
위원회	소관기관(부서)	위원회	소관기관(부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기획총괄부, 체육사업1·2부, 문화사업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기획행정위원회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실(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구청(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기획총괄부, 체육사업1·2부, 문화사업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환경경제위원회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마이스산업과, 첨단산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환경친화사업소(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행정과) 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킨텍스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ENE)사업부)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환경경제위원회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마이스산업과, 첨단산업과) **여성가족국(위생정책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연구개발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환경친화사업소(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행정과) 구청(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킨텍스 고양도시관리공사(환경에너지(ENE)사업부)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건설교통위원회	시민안전·교통실(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고양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부, 도시사업부)	건설교통위원회	시민안전·교통실(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정책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고양도시관리공사(교통사업부, 도시사업부)

현 행		변 경	
위원회	소관기관(부서)	위원회	소관기관(부서)
문화복지 위 원 회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도서관과)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고양문화재단	문화복지 위 원 회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신한류관광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도서관과)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구청(시민복지과, 가정복지과) 고양문화재단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여성가족국에 두는 과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세분화함.(제3조제2항제3호, 제5호)

-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여성가족국의 위생정책과”를 신설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여성가족국”을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로 변경함.

○ 교육문화국 신한류관광과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지정함.(제3조제2항제5호)

고양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

2015년 02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45호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하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고양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의정담당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의정담당관 고 영 일
	팀 장 성 명	의사팀장 조 재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태 은 (031-8075-387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 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하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고양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삭 제>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제3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현 행	개 정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	**제4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개 정 이 유

○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의 제명)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며 내용을 간결하게 개정함.(제1조)

다. 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함과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을 통합함.(제2조제1항~제3항)

라. 소속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것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개정함.(제3조제1항)

마.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의 명칭을 개정함.(제4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에 관하여 필요한 ⇒ "~에 필요한 "

○ "지휘 감독 ⇒ "지휘·감독 "

○ "일반적사무" ⇒ "일반적인 사무"

○ "규정함" ⇒ "정함"

고양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5년 02월 23일

고양시 조례 제1646호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계간으로 한다.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과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의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고양시민 8명 이내
3. 고양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촉위원의 신분보장)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촉되지 아니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3. 제7조제3항제1호의 위원으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홍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그 밖에 소식지나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의정담당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의정담당관 고 영 일
	팀 장 성 명	의사팀장 조 재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태 은 (031-8075-387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명칭)**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계간으로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계간으로 한다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고양시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과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의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 행	개 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4인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양시민 8인 이내 3. 고양시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고양시민 8명 이내 3. 고양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제8조(위촉위원의 신분보장)**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촉되지 아니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현 행	개 정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3. 제7조 제3항 제1호의 자로서 의원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3. 제7조제3항제1호의 위원으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홍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홍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기타 소식지나 고양시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그 밖에 소식지나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수록할 내용을 작성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함.(제1조)

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약칭을 사용함.(제2조, 제6조)

다. 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14명 이하→11명 이내)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함.(제7조제1항, 제4항)

라. 위원의 '해촉'을 '신분보장'으로 현행 법제 흐름에 맞게 개정함.(제8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조문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16조까지)

○ "~에 관하여 필요한 ⇒ "~에 필요한 "

○ "~인" ⇒ "~명 "

○ "잔임기간" ⇒ "남은 임기"

○ "규정함" ⇒ "정함"

○ "각 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5년 2월 23일

고양시 훈령 제316호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소속”을 “고양시소속(이하 ”시소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마이스산업육성과”를 “마이스산업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창조성장개발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조성장개발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호 중 ″창조성장개발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도로정책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창조성장개발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마이스산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마이스산업과장 윤 희 성
	팀 장 성 명	국제협력팀장 이 흥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주 원 (031-8075-352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시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생략)	**제2조(적용대상)** ① 고양시소속 (이하 "시소속"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무국외여행허가신청) 마이스산업육성과..... . 1.~5. (생략)	**제5조(공무국외여행허가신청)** 마이스산업과..... . 1.~5. (현행과 같음)
제6조(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제한) ① 창조성장개발국장.....	**제6조(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제한)** ① 민생경제국장.....
제8조(신청서류의 보완등) ① 창조성장개발국장..... ② 창조성장개발국장.....	**제8조(신청서류의 보완등)** ① 민생경제국장..... ② 민생경제국장.....
제9조의3(항공운임 지급) 공무국외여행 시 항공운임(항공료)은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며 국외여행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1조(심사대상) (생략) 1. ~ 3. (생략) 4. 창조성장개발국장.....	**제11조(심사대상)**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민생경제국장.....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민생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마이스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도로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된다.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교육과장, 시민안전과장,

현 행	개 정
제18조(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 ③창조성장개발국장..... ④안전행정부.....	제18조(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자치부..... ③민생경제국장..... ④행정자치부.....

고양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여비지급 시 여행사에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 2015.01.19.일자 고양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 및 심사위원 변경

○ 2014.11.19.일자 정부부처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여행 시 항공운임(항공료)은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여 국외여행자 본인에게 지급 금지 조항 삭제(제9조의3)

나. ″마이스산업육성과″를 ″마이스산업과″로 변경(제5조)

다. ″창조성장개발국장″을 ″민생경제국장″으로 변경(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4호, 제18조제3항)

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 중 ″환경보호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도로정책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변경(제12조제2항)

마. ″행정안전부″및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제18조)

고양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최 성 ㊞

2015년 2월 23일

고양시 훈령 제317호

고양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행복프로젝트팀”이란 부서별 주요 핵심공약 담당자로 구성하고, 조언 및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구성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에 적합한 계획 수립
2. 공약사업별 목표 및 이행내용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투자수요
4.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5.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사항
6. 기타 공약사항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고양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보안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이 접수될 경우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 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추진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 평가결과를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장에게 시정, 보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이행실적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시민들이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을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작성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의견 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와 협의 후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한다.

제10조(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 설치) ① 시장은 공약실천 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이하“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정책기획담당관
입안자	과 장 성 명	정책기획담당관 이 흥 민
	팀 장 성 명	정책평가팀장 우 인 성
	담 당 자 성명·전화	인 소 영 (031-8075-2063)

고양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제정

□ 제정이유

○ 시장 공약관리에 있어 부서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 공약사업 실천에 있어 폭 넓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통의 통로로 제도적인 상설화하여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자치역량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실천계획서 내용을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실천계획서는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제4조)

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타당성 검토, 관계 전문가 자문, 시민의견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제6조)

다. 주관부서에서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제출 실적을 분석·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함(제7조 및 제8조)

라.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약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개설 및 공약사항 반영(제9조)